



I 질병관리청 소관 생물안전 시설

- 1 질병관리청에서는 생물안전 연구시설(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연구시설에 해당)과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,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시설 신고 및 허가

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(BL1~2)

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시
(콜레라균, 이질균, 보툴리눔균 등)

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(BL3~4)

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시
(탄저균, 브루셀라균 등)

생물안전 연구시설 신고(BL1~2)

LMO 개발실험시
(보건복지부 소관 국공립 연구기관의 경우)

생물안전 연구시설 허가(BL3~4)

LMO 개발실험시
(인체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)

2 생물안전 시설 설치·운영 근거 법령

‘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s://law.go.kr/>)’ 홈페이지 – 법령(법률)에서 검색 가능

‘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s://law.go.kr/>)’ 홈페이지 – 행정규칙(고시)에서 검색 가능



- ✓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(약칭「유전자변형생물체법」)
- ✓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」
- ✓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약칭「감염병예방법」)
- ✓ 「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」

II

생물안전 1·2등급 시설

1 신규신고

구분	생물안전 연구시설 (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연구기관과 보건복지부 소속 보건의료기관 및 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)	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
관련 법률	유전자변형생물체법 (제22조제1항)	감염병예방법 (제23조제2항)
서식	시행규칙 [별지 제26호서식] 연구시설 설치·운영 신고서	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서식]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·운영 신고서
처리 기한	60일	60일
제출 서류	<p>다음 각 호의 서류 1부 또는 전자문서(휴대용저장매체) 1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구시설의 설계도서(평면도) 또는 그 사본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(임대 시에 한함)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(위해방지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)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연구시설 운영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(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) 별지 제9-1호부터 제9-7호서식의 연구시설 종류별 1·2등급 연구시설 설치·운영 점검 결과서 	<p>다음 각 호의 서류 1부 또는 전자문서(휴대용저장매체) 1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계도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축물대장(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) 인체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(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한다)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운영 절차를 포함한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(2등급 취급시설에 한함) 별지 제5호부터 제8호서식 중 해당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·운영 점검 결과서
벌칙 등	<p>제41조(벌칙)제4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: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·운영한 자</p>	<p>제79조(벌칙)제2의2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: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한 자</p>

※ 생물안전 연구시설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LMO법과 감염병예방법 해당 서식 각각 제출

2 변경신고

구분	생물안전 연구시설	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
관련 법률	유전자변형생물체법 (제22조제3항)	감염병예방법 (제23조제4항)
서식	시행규칙 [별지 제28호서식] 연구시설 설치·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	시행규칙 [별지 제15호2서식]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·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
변경 사항	기관명(법인명) 대표자 시설 설치·운영책임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설치·운영 장소(규모) 안전관리등급 및 용도변경 (BL1↔BL2 변경사항, 일반↔대량↔동물 등)	기관명(법인명) 대표자 시설 설치·운영책임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설치·운영 장소(규모) 안전관리등급 및 용도변경 (BL1↔BL2 변경사항, 일반↔대량↔동물 등) 취급 고위험 병원체
처리 기한	10 일	60 일
제출 서류	<p>※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(서류 1부 또는 전자문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(예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- 교육수료증(생물안전관리책임자, 관리자) - 인사발령 또는 임명, 자정 증빙자료 - 도면 등 증빙자료 생물안전 연구시설 설치·운영신고 확인서 원본 1·2등급 시설 설치·운영 점검결과서 통합고시 서식 제9의1~5호 <p>※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(서류 1부 또는 전자문서)</p>	<p>※ 규모 및 용도(등급)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(서류 1부 또는 전자문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·운영신고 확인서 원본 1·2등급 시설 설치·운영 점검결과서 통합고시 서식 제5~8호 점검결과서 내 각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<p>※ 단순 변경신고 시행(대표자, 시설 설치·운영책임자, 생물안전관리책임자,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)을 증명하는 서류(예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- 법정교육 수료증 - 인사발령 또는 임명, 자정 증빙자료 등 - 고위험병원체 취급자(시설 설치·운영 책임자, 생물안전관리자 및 관리책임자,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)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증빙자료(시행규칙 제20조의8) - 고위험병원체 취급 기준 증빙자료(법률 제23조의4)
벌칙 등	<p>제44조(과태료)제7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-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</p>	<p>제83조(과태료)제1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-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</p>

※ 생물안전 연구시설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LMO법과 감염병예방법 해당 서식 각각 제출

III 생물안전 3등급 시설

1 신규허가

구분	생물안전 연구시설 (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)	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
관련 법률	유전자변형생물체법 (제22조제2항)	감염병예방법 (제23조제3항)
서식	시행규칙 [별지 제26호서식] 연구시설 설치·운영 허가신청서	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서식]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·운영 허가신청서
처리 기한	60일	60일
제출 서류	<p>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(원본 1부 및 전자문서(휴대용저장매체) 1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구인력 및 기술능력 현황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자체 연구시설 검사보고서(기재된 순서에 따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구시설 검증 전 사전 점검보고서 (계측장비 검교정서 포함) 배관, 전기, 가스 등 연구지원 설비 사항 검증 결과 연구시설의 물리적 일폐 사항 검증 결과 공기조화 및 배기시스템 검증 결과 폐기물처리시스템 검증 결과 양문형고압증기멸균기 검증 결과 생물안전작업대 검증 결과 동물케이지시스템 검증 결과(설치의 경우) 생물안전작업대 방식의 글로브박스(Glove box) 검증 결과(설치의 경우) 기타 연구시설의 일폐 및 운영에 필요한 빌트인 장비의 검증결과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절차를 포함 한 기관생물안전지침(3·4등급 연구시설은 시설운영사항 포함) 	<p>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(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) 및 전자문서(휴대용저장매체) 2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계도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축물대장(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) 인체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다음 각 목의 취급시설 점검 및 검증결과 서류(각 목의 서류 순으로 합본한 뒤, 첫 장에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). 다만 아목과 자목의 경우는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별지 제1호부터 제4호서식 중 해당되는 3·4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 운영 점검 결과서 (계측장비 검교정서 포함) 배관, 전기, 가스 등 연구지원 설비 사항 검증 결과 시설의 물리적 일폐 사항 검증 결과 공기조화 및 배기시스템 검증 결과 폐기물처리시스템 검증 결과 양문형고압증기멸균기 검증 결과 생물안전작업대 검증 결과 동물케이지시스템 검증 결과 Isolator 검증 결과 기타 시설의 일폐 및 운영에 필요한 빌트인 장비의 검증결과 취급인력 및 기술능력 현황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운영 절차를 포함한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
벌칙 등	제40조(벌칙)제3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: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·운영한 자	제78조(벌칙)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: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한 자

※ 생물안전 연구시설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LMO법과 감염병예방법

2 변경허가

구분	생물안전 연구시설	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
관련 법률	유전자변형생물체법 (제22조제2항)	감염병예방법 (제23조제3항)
서식	시행규칙 [별지 제28호서식] 연구시설 설치 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	시행규칙 [별지 제15호2서식]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·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
변경 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구시설의 물리적 구조 변경 공기조화 및 급배기시스템 변경 폐수처리시스템 변경 양문형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또는 철거 연구시설 설정 차압에 변화를 주는 장비의 설치 또는 철거(고시 제 9-3조제5항 점검 및 검증결과 서류 사·차항 장비) 자동제어시스템 변경 취급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 취급 동물 변경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설의 물리적 구조 변경 공기조화 및 급배기시스템 변경 폐수처리시스템 변경 양문형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또는 철거 연구시설 설정 차압에 변화를 주는 장비의 설치 또는 철거(고시 제5조제4항 점검 및 검증결과 서류 사·차항 장비) 자동제어시스템 변경 취급 고위험병원체 변경 취급 동물 변경
처리 기한	60일	60 일
제출 서류	<p>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(원본 1부 및 전자문서(휴대용저장매체) 1부)</p> <p>※ 변경허가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(예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변경계획[변경계획보고서, 변경도면(전, 후 비교 도면), 공사계획(시방서, 공정일정표), 검증계획(검증항목, 일정표)] -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심의결과서(취급동물, 취급병원체 변경 시) - 운영지침 개정본(변경내용을 반영한 운영 지침) 	<p>제40조(벌칙)제3항</p> <p>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: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·운영한 자</p> <p>제23조(허가취소 등)제1항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구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음 :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</p> <p>제78조(벌칙)제1항</p> <p>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: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한 자</p> <p>제23조의2(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)제2항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음 :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</p>

※ 생물안전 연구시설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LMO법과 감염병예방법 해당 서식 각각 제출

3 변경신고

구분	생물안전 연구시설	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
관련 법률	유전자변형생물체법 (제22조제2항)	감염병예방법 (제23조제3항)
서식	시행규칙 [별지 제28호서식] 연구시설 설치·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	시행규칙 [별지 제15호2서식]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·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
변경 신고 사항	기관명(법인명) 대표자 시설 설치·운영책임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	기관명(법인명) 대표자 시설 설치·운영책임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
처리 기한	10일	60일
제출 서류	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(서류 1부 또는 전자문서) ※ 변경신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(예시) -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- 법정교육 수료증 - 인사발령 또는 임명, 지정 증빙자료 등	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(서류 1부 또는 전자문서) ※ 변경신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(예시) -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- 법정교육 수료증 - 인사발령 또는 임명, 지정 증빙자료 등 - 고위험병원체 취급자(시설 설치·운영 책임자, 생물안전관리자 및 관리책임자,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)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증빙자료(시행규칙 제20조의8) - 고위험병원체 취급 기준 증빙자료(법률 제23조의4)
벌칙 등	제44조(과태료)제6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: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23조(허가취소 등)제1항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구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음 :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	제83조(과태료)제1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※ 생물안전 연구시설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LMO법과 감염병예방법 해당 서식 각각 제출

4 기록관리

구분	생물안전 연구시설	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
관련 법률	유전자변형생물체법 (제26조)	
서식		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」 [별지 제2-7호서식] 시험·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 [서식9의11]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·운영대장
벌칙 등		제44조(과태료)제12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: 관리·운영기록을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자

「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」
[별지 제9호서식] 고위험병원체 수송내역서

[별지 제9호서식] 고위험병원체 생물안전 사고보고서

※ 운영기준 필수사항(자유양식)
- 고위험병원체 관리·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
-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, 보고 및 보관
- 자체 안전점검을 상반기, 하반기 연2회 실시 기록